

암 관리 법	암관리법시행령	암관리법시행규칙
<p><b>제9조(암조기검진사업)</b>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조기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검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받는 자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에게 관련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b>제9조(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b>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p>	<p><b>제7조(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및 절차 등)</b>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암종별 연령기준은 별표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li> <li>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li> <li>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li>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암</li> <li>2. 유방암</li> <li>3. 자궁경부암</li> <li>4. 간암</li> <li>5. 대장암</li> </ol> </ol>

암 관리 법	암관리법시행령	암관리법시행규칙
<p><b>제10조(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b>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정한 진료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p>		<p>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의 검진주기·검진방법 및 검진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11조(말기암환자관리사업)</b>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개발 및 보급</li> <li>2.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li> <li>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 의료사업</li> <li>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li> <li>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기암환자관</p>	<p><b>제10조(말기암환자전문병원의 지정 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병원을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li> <li>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li> </ol>	<p><b>제8조(말기암환자전문병원의 지정)</b>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말기암환자전문병원지정신청서에 의료기관설허가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가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말기암환자전문병원지정증을 교부한다.</p>

암 관 리 법	암관리법시행령	암관리법시행규칙
리사업의 세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p><b>제9조(말기암환자관리사업)</b> 시장·군 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 방문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가말기암환자 적정한 통증관리 및 간호서비스</li> <li>말기암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교 육 및 정보의 제공</li> <li>그 밖에 말기암환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li> </ol>
<b>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b> 이 법의 규 정에 의하여 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암 관 리 법	암관리법시행령	암관리법시행규칙
<p><b>제13조(위임 및 위탁)</b>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또는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b>제14조(벌칙)</b>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11조(위임 및 위탁)</b>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기암환자전문병원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p> <p>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암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의 프로그램개발·평가 및 관리</li> <li>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li> </ol>	

암 관 리 법	암관리법시행령	암관리법시행규칙
부 칙	부 칙	부 칙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이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p> <p>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립암센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를 삭제한다.</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표]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의 암종류별 연령기준  
(제7조1항관련)

암 종류별	연령기준
위 암	40세 이상의 남·여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	30세 이상의 여성
간 암	40세 이상의 남·여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여

(앞 쪽)

### 중앙임등록본부지정신청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뒤 쪽)	
명 칭	전 화 번 호
소재지	
기관현황 성명(내포자)	주민등록번호
직원수	
임등록사업 주 관 부 서	주민등록번호
부 서 명	전 담 인 력
업무 개시일	전 화 번 호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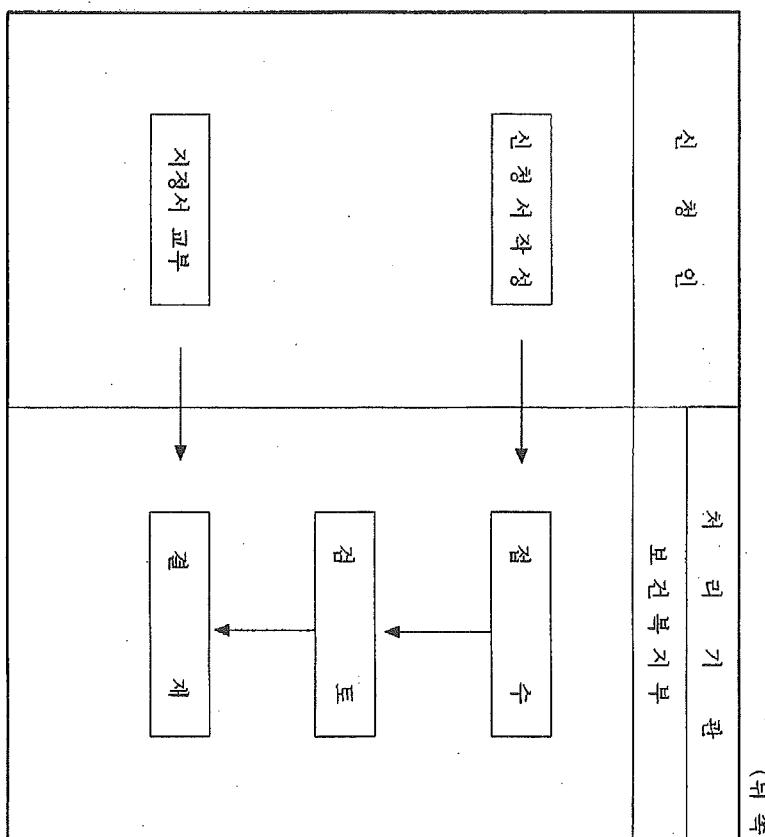
암판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임등록본부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 가. 정관 1부
- 나. 암등록사업을 위한 시설·인력 및 장비현황 1부
- 다. 암등록사업계획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 중앙암등록본부지정서

중앙암등록본부지정서			
기관현황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암등록사업 주관부서	성명(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업무개시일			

암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④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 지역암등록본부지정신청서

(앞쪽)

지역암등록본부지정신청서			
기관현황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원수			
암등록사업 주관부서	성명(책임자)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업무개시일			
기타사항			

암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가. 정관 1부
- 나. 암등록사업을 위한 시설·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 다. 암등록사업 계획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부록)

[별지 제4호서식]

**지역임등록분부지정서**

명 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성명(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업무개시일

주관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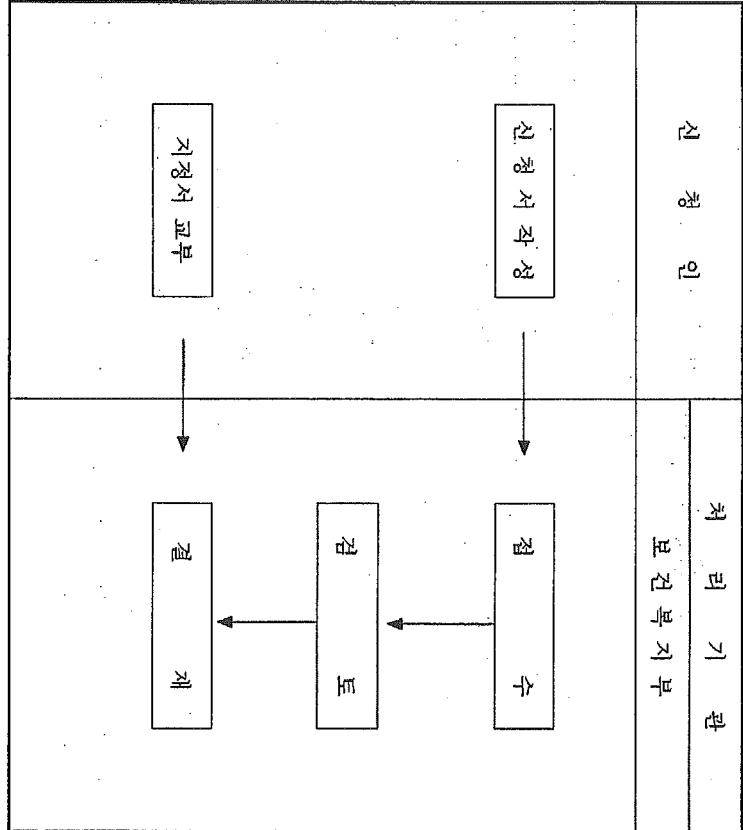
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임등록분부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22-



-23-

(앞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말기암환자전문병원지정신청서

신청인

처리기관

명 칭		증 별			
소재지					
의료기관 진료과목					
종사자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설치자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 호	설치예정일		

암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전문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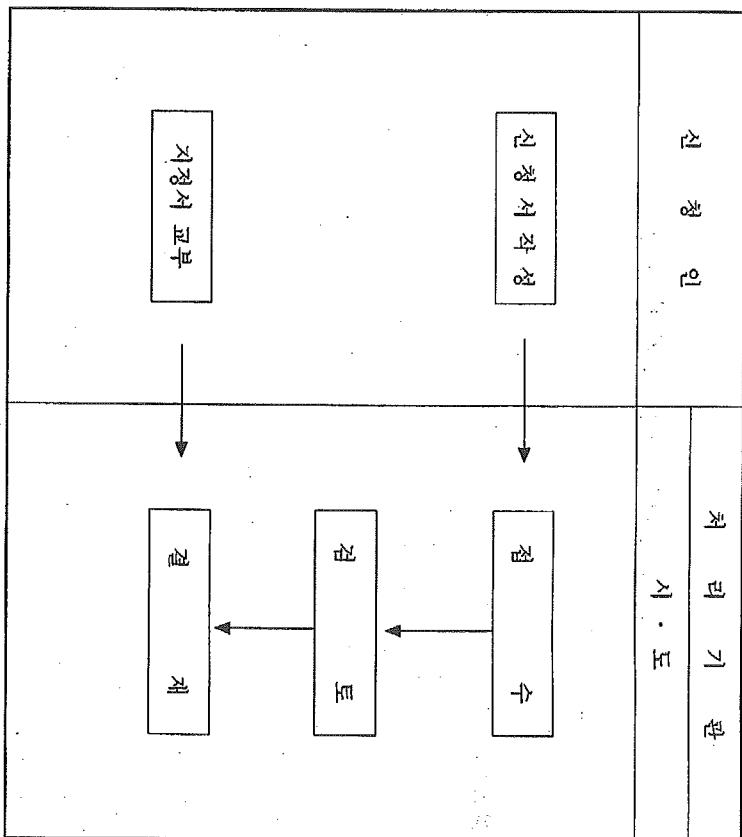
서 · 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 24 -

(뒤 쪽)



- 25 -

지정번호 제 호

## 발기 암환자 전문 병원 지정증

명      청	
의료기관 소재지	
진료과목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설치자 주 소	
면허증별	면허번호      제 호
규모      입원설	설명상      병상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 · 도 · 치 · 사 · 인

210mm×297mm(보존용지)

부립암센티엄·시행법

국립암센터법	국립암센터법시행령
<p>제정 2000. 1. 12 법률 제6149호</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한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법인)</b>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p> <p><b>제3조(설립)</b> ①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li> <li>4. 임원의 성명 및 주소</li> <li>5. 공고의 방법</li> </ol> <p><b>제4조(정관)</b> ①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li> <li>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li> <li>5. 이사회에 관한 사항</li> </ol>	<p>제정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4호</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국립암센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국립암센터법	국립암센터법시행령
<p>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②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b>제5조(사업)</b> 암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암에 관한 연구</li> <li>2. 암환자의 진료</li> <li>3. 암의 연구 및 암환자의 진료에 관련된 교육훈련</li> <li>4. 암 예방 및 홍보</li> <li>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li> <li>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li> <li>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li> </ol> <p><b>제6조(임원)</b> ①암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이사(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의</p>	<p><b>제2조(당연직 이사)</b> 국립암센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립암센터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lt;개정 2001.1.29&gt;</p>

국립암센터법	국립암센터법시행령
<p>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임원이 임기종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감사는 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p> <p><b>제7조(이사회)</b> ①암센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산 및 결산</li> <li>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li> <li>3. 원장 추천</li> <li>4. 정관의 변경</li> <li>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li> <li>6.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국립암센터법	국립암센터법시행령
<p><b>제8조(원장)</b> ①암센터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암센터를 대표하며, 암센터의 업무를 통합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에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9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b> ①암센터에 암연구소 및 부속병원 기타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암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p> <p><b>제10조(겸직)</b> ①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암센터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기타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b>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암센터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겸직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소속대학에서 지급한다.</p> <p>&lt;개정 2001.1.4&gt;</p>

국립암센터법	국립암센터법시행령
<p><b>제11조(재원)</b> 암센터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p>	<p>③암센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겸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b>제4조(겸직해제)</b> ①원장은 겸직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겸직자의 소속대학 총·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5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b> 암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li> <li>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li> <li>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li> </ol> <p><b>제6조(출연금 지급신청)</b> 암센터는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7조(잉여금의 처리)</b> 암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p>

국립암센터법	국립암센터법시행령
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b>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b> ①정부는 암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암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암센터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b>제14조(사업연도)</b> 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b>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b> ①암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b>제16조(결산서의 제출)</b> 암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10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국립암센터법	국립암센터법시행령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b>제17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b> ①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지식과 암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b>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b> 이 법에 의한 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b>제19조(비밀임수의 의무)</b> 암센터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b>제20조(민법의 준용)</b> 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b>제21조 삭제 &lt;2003.5.29&gt;</b>	
<b>제22조(지도·감독)</b>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	

국립암센터법	국립암센터법시행령
<p>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b>제23조(벌칙)</b> ①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설립준비)</b>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암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p> <p>②설립위원은 암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설립 당시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암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b>제3조(설립비용)</b> 암센터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b>제2조 및 제3조 생략</b></p> <p><b>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내지 ④생략</p>

국립암센터법	국립암센터법시행령
<p>이를 부담한다.</p> <p><b>제4조(공무원의 파견)</b>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암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생략</p> <p>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립암센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p>	<p>⑤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p> <p>⑥내지 ⑭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 내지 <b>제4조</b> 생략</p> <p><b>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내지 &lt;129&gt;생략 &lt;130&gt;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차관·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lt;131&gt;내지 &lt;152&gt;생략</p>

## 국립암센터 정관

## 국립암센터 정관

[제정 2000. 3. 22]

개정 2001. 1. 17  
개정 2004. 6. 16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 표기는 “National Cancer Center(약칭 NCC)”로 한다.

**제3조(소재지)** 암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주소지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암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에 관한 기초 및 임상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의 연구 및 암환자의 진료에 관련된 교육훈련
4. 전공의 및 암관련 의료요원의 수련과 교육
5. 암 예방 및 홍보
6.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8. 암관련 병원 개원 및 운영·지도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
9.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개정 2001. 1. 17>
10. 기타 암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1. 1. 17>

**제5조(재산의 구분)** ①암센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중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한다.

1. 정부가 출연하는 재산
2. 외국정부나 기관, 기타의 자로부터 양여 또는 기부받은 토지, 건물, 기기, 설비
3. 정부출연금·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기, 설비
4. 기타 재산

**제6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처분, 증여, 임대, 담보,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연도 및 회계)** ①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암센터의 회계는 기업회계에 의하여 예산 및 회계업무

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재원)** 암센터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의 수익금
4. 전년도 이월금
5. 연구용역 수입금
6. 기타수입

**제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암센터가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연도의 4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10조(출연금 교부신청)** 암센터는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등)** ① 암센터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산 총칙으로 원장에 위임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경상경비의 경우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고 계속 사업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기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결산서의 제출)** ①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암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 암센터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채무부담 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계속비)** 암센터는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암연구를 위하여 암연구의 특성상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연구 사업에 대하여는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예비비)** 암센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해의 예산액의 100분의 3이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산의 운용)** 암센터의 자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채, 공채 또는 상장유가증권 매입
3.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입
4. 암센터 업무에 사용되는 건물과 그 대지의 취득 및 임대
5.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운영방법

**제18조(임원)** ①암센터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4. 6. 16>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9인 이내(이사장과 원장 및 당연직 이사 포함)
  4. 감사 1인
- ②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9조(이사선임)** ①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당연직이사는 기획예산처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제20조(감사)**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감사가 임기만료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퇴위되었을 때에는 퇴위된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④감사는 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제4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암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당연퇴직 및 해임)** ①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23조(원장의 해임건의)** 이사회는 원장이 제2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보수)** ①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원장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이사장)** ①이사장은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장이 유고일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을 지체없이 선임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장·이사(당연직이사 제외)와 감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원장 추천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3. 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인사·보수 및 회계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장·이사·감사 및 원장의 추천 및 해임,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을 갈음한다. 이 경우 차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원장은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의 임기)** ①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이사의 임기종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후임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원장, 감사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 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의사기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속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제33조(원장)** ①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원장은 암센터를 대표하며, 암센터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장의 임기만료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 전일까지 그 직무를 연구소장, 부속병원장의 순으로 대행한다.

**제35조(기구와 직원의 정원)** ①암센터에는 연구소·부속병원·행정처 또는 사무국 및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암센터 직원의 정원은 900명이내로 한다. <개정 2004. 6. 16>

③암센터의 연구소·부속병원·행정처 또는 사무국 및 기획조정실의 하부조직과 부서별 정원 및 직렬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36조(인사위원회)** ①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위하여 암센터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은 암센터 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7조(직원)** ①암센터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제1항의 직원에 관한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38조(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계약의 만료 또는 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9조(겸직)**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 등을 겸할 수 있다.

**제40조(겸직자의 직무와 보수)**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센터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은 암센터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암에 관한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겸직자에게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이외에 암센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겸직해제등)** ① 원장은 겸직자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암센터에 중대한 손실 및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겸직자의 소속대학

총·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지식과 암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업무의 위탁)** 암센터는 의료비 등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체신판서 및 금융기관에 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기금교수)** 원장은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직원의 정원 범위내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암센터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금교수를 두어 암센터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용기간, 절차 및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45조(정관의 변경)** ① 암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46조(지적재산권)** 암센터 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수행 중에 이루어진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제소유권은 따로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암센터의 소유로 하며, 당해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7조(해산)** ① 암센터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암센터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48조(공고방법)** 암센터에서 공고할 사항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에서 게시 공고할 수 있다.

**제49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이 정관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암센터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암센터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② 암센터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다만, 원장은 자체없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설립당시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설립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정관작성 및 서명)** 암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들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2000. 3.

○ 정관작성자 : 국립암센터 설립위원

설립위원장 : 김노경 (서울의대 교수)

설립위원 : 맹평호 (가톨릭의대 교수)

" : 정두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장)

" : 김시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 : 오대규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

부 족 <2001. 1. 17>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족 <2004. 6. 16>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 한다.

保健福祉部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4. 6

がん管理関係法令集